

기업지배구조헌장

2019. 03. 05. 제정

전문

동아쏘시오홀딩스(이하 “회사”)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글로벌 기업의 초석을 명확히 인식한다. 이에 회사는 “동아쏘시오홀딩스 주식회사 지배구조헌장”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세계최고 수준의 지배구조를 지향한다.

I. 주주

1. 주주의 권리

- ① 주주는 기업의 소유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③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주주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 ① 회사는 보유 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고, 주주가 보유한 주식수에 따라 그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 ② 회사는 거래관계에 있어 주주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
- ③ 주주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3. 주주의 책임

-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II. 이사회

1. 이사회 기능

- ① 이사회는 회사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중요 경영 의사결정 및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정관이나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이사회 고유의 권한은 제외한다.

2. 이사회 구성 및 이사의 선임

- 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이어야 하며, 이사회 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에 충분한 수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② 이사회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를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로 한다.
- ③ 이사회는 회사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지닌 이사로 구성한다.
- ④ 회사는 주주가 이사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판단시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외이사

- ①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사외이사 후보를 공정하게 추천하기 위해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한다.
- ③ 회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④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에 소요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4. 이사회 운영

- ①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연 4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긴급한 경우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권한과 구성,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이사회 규정에 따른다.
- ③ 회사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유지·보관한다.
- ④ 이사는 필요한 경우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5.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업무수행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② 모든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은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이사의 의무와 책임

-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②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고, 기업과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해야 한다.
- ③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 ④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이사가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⑤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 ⑥ 회사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에 대처하고, 유능한 인재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해서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7. 평가 및 보상

- ① 이사회는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진 평가 보상체계를 설계·운영한다.

- ② 이사회는 경영진의 경영활동 내용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Ⅲ. 감사기구

1. 감사위원회

- ①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원 중 1인 이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회사의 비용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매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 관련 임원 또는 외부감사인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유지·보관한다.

2. 외부감사인

- ①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하며, 회사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 ②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Ⅳ. 이해관계자

- ① 회사는 종업원, 채권자, 공급업자, 소비자, 지역사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준수를 통해서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촉진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 ③ 회사는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감자, 분할·합병 등의 사항에 대해서 채권자 보호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④ 이해관계자가 주주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이해관계자 및 주주로서의 각각의 권리는 보호되고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

- ⑤ 회사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의 관련 정보 접근을 지원한다.

V.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1. 공시

- ① 회사는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공시사항을 신속하게 공시한다. 또한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공시한다.
- ② 회사는 공시내용을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 ③ 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고,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재무보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인증하여야 한다.

2. 기업경영권 시장

- ① 회사의 인수, 합병·분할,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회사 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회사의 경영권 방어 행위는 일부 주주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희생하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된다.
- ③ 회사는 합병·분할,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한 주주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